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6

발의연월일: 2024. 8. 16.

발 의 자:김도읍 • 권성동 • 박대출

구자근 • 조승환 • 곽규택

주진우 • 이성권 • 정희용

조지연 • 박형수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 · 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 · 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 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새마을금고법」의 개정)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제2조(「전자정부법」의 개정)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제4조(「행정사법」의 개정)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1. <u>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u>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는 피한정후견인	
2. ~ 18. (생 략)	2. ~ 1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제61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①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①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	
리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u>	1. <u>피성년후견인</u>
<u>견인</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제176조(임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발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는 피한정후견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제6조(결격사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	
정사가 될 수 없다.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u>	1. <u>피성년후견인</u>
<u>견인</u>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